

해양수산부 공고 공고 제2023-1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도개요

□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본 공고의 신청대상 범위는 1차 연장 대상(노란색 음영)에 한함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 신청자격 및 제외요건(1차연장)

□ 신청자격 요건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해양수산 혁신제품(FT1, FT3)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24. 1. 28.

②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기본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해수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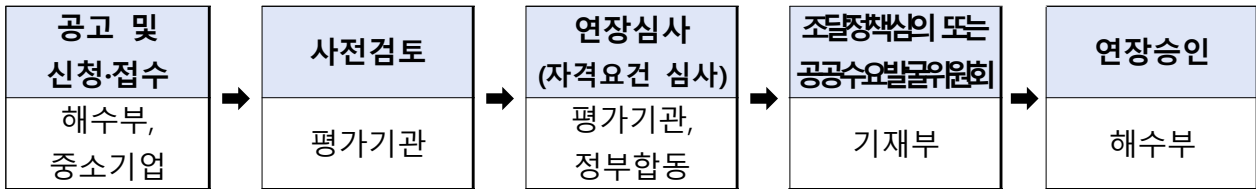
○ (제외요건)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舊 FT1)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舊 FT3)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3. 추진 및 평가절차(1차연장)

□ 지정절차



* 추진주체 :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부합동) 기재부, 해수부, 조달청 및 전문지원기관(혁신제품지원센터)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12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

* 지정된 혁신제품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른 제외요건 미해당 여부 확인

② 연장심사 (12월)

- 공공부문 매출액 발생 여부, 매출 계약체결 여부, 경진대회· 혁신 관련 중앙관서 시상·표창 등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연장심사 실시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12월)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연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대상 최종확정

④ 지정 및 인증서 발급 (12월~'24년 1월)

- 최종연장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1년 갱신)

4. 신청 서류(1차연장)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신청서
구비서류

※ ①~⑤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1	필수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서식2	필수
③	신청자격	(3-1) ^{비고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시
	증빙자료	(3-2) ^{비고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1개 이상	(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제출 필요)	(3-4) ^{비고4} 구매확약서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물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	필수
⑤	기술입증 자료목록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특허 등) 첨부	서식5	필수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신청방법(1차연장)

□ 공고기간 : '23. 11. 22(수) ~ 11. 29(수)

□ 신청기간 : '23. 11. 22(수) ~ 11. 29(수) 16: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 tech.kimst.re.kr → 로그인 → 혁신제품지정 → 신청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문의처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3460-0394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02-3460-0394 (spark8051@kimst.re.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